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9
----------	-----

2016. 2. 4.(목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월 26일

(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차영)

가. 제안이유

○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운용중인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의사결정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

나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인원수 변경(제11조제2항)
- 20명 이내 → 15명 이내

○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변경 (제11조제5항)

- 당연직 위원 및 간사를 업무기준으로 변경하고,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시장·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

· (당연직 위원) : 기업유치지원과장 → 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,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 제외

· (간 사) : 기업지원 담당 사무관 → 판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

○ 판매장운영위원회 회의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개최 조항 삭제(제13조제2항)

- 매년 2월 소집 개최토록 한 정기회의 경우 개최 실익 및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장이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 개최토록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○ ‘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운영위원회 인원수를 20명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판매장운영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것으로 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○ 다만, 기존 운영위원으로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가 참여했었는데 동 조례의 개정예 따라 운영위원에서 배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7. 수 정 안 요 지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. 1. 26, 김학철 의원

○ 수정이유

- 개정되는 조례안 중 제13조제2항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

○ 수정 주요내용

-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, 정기회는 매년 2월에,

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」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20명 이내”를 “15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 경제통상국장이 되며”를 “경제통상국장이 되고”로 하며, “도 본청의 기업유치지원과장과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로 하고”를 “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기업지원 담당 사무관”을 “판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, 정기회는 매년 2월에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 ~ 제10조 (생략)</p> <p>제11조(판매장운영위원회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20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<u>도 경제통상국장이 되며, 당연직</u> 위원은 <u>도 본청의 기업유치지원과장과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로</u> 하고, -----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들 두며, 간사는 <u>기업지원 담당 사무관</u> 이 된다.</p>	<p>제1조 ~ 제10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판매장운영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5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<u>경제통상국장이 되고, 당연직</u> 위원은 <u>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</u> 며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들 두며, 간사는 <u>판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</u> 이 된다.</p>	<p>제1조 ~ 제10조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1조(판매장운영위원회 설치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2조 (생략)	제12조 (현행과 같음)	제12조 (개정안과 같음)
<p>제13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, 정기회는 매년 2월에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</u></p>	<p>제13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</u></p>	<p>제13(회의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<u>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, 정기회는 매년 2월에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</u></p>
제14조 ~ 제16조(생략)	제14조 ~ 제16조(현행과 같음)	제14조 ~ 제16조(개정안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취

□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

제11조(판매장운영위원회 설치) ①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도 경제통상국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은 도 본청의 기업유치 지원과장과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궐외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⑥ 도지사는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, 정기회는 매년 2월에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